

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0호
「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(법 제19조), 국립·공립 정신병원(법 제21조), 정신요양시설(법 제22조)에서 퇴소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

규정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의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,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